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48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한병도·이성윤·허 영

이재관 • 이해식 • 강득구

조 국・임오경・정태호

박 정・박수현・유건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, 교육훈련, 복무,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「국가공무원법」이 개정(2022.12.27.)된 바 있음.

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 구된다는 점에서,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 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.

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등).

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8호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

제9조 중 "제8호에 규정된"을 "제8호 각 목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27조 단서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를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·제3호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제8호,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①	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			
로 임용될 수 없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	8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u>		
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	<u> 해당하는</u>		
<u>된</u>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			
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			
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			
지나지 아니한 사람			
<u><신 설></u>	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		
	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		
	따른 성폭력범죄		
<u> <신 설></u>	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		
	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		
	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		
	제3호에 따른 죄		
<u> <신 설></u>	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		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		
	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	
9. • 10. (생략)	9. • 10.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벌금형의 분리선고) 「형	제9조(벌금형의 분리선고)		

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 조제2항제7호 또는 <u>제8호에 규</u> 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 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.

제27조(당연퇴직) 경찰공무원이 기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히 퇴직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청기 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 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, 제8조제2항제6호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아 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 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